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역동경창 |
|---|---|---|

**2017년 6월 22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21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6. 21.(수) | 담당부서 | 지역경제총괄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천영길 과장(044-203-4410) | 담 당 자 | 김범수 사무관(044-203-4451) |

# 6.22.부터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」 제도 시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6.22.부터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」 제도를 시행**하기로 했다.

○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**지난해 발표**('16.10.31.)**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**한 것으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**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**하고자 도입했다.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**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** 수 있도록 엄밀한 **지정기준과 절차, 지원기간,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**에 관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**이번** 국가균형발전특별법 **시행령과 고시에 규정**했다.

□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,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·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,

○ 정부는 **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,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**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「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」에서 결정하기로 했다.

【붙 임】 1.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
2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범수 사무관(044-203-44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붙임1** **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6.22일 시행)**

대통령령 제28130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·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
2.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
3.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
4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②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

1.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
2.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
3. 지역의 휴·폐업 업체 수 증가율
4.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
5.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
6.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,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의3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)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5조의4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, 융자,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
2.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
3.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 지원
4.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
5.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
6.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15조의5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)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5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
2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제15조의4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
3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
4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

제15조의6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제15조의5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,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15조의2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·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br>1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<br>2.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<br>3.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<br>4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<br>②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<br>1.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<br>2.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<br>3. 지역의 휴·폐업 업체 수 증가율<br>4.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<br>5.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<br>6.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>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,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.<br>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 |

| | |
|---|---|
| | ⑤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|
| <신 설> | 제15조의3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)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.<br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. |
| <신 설> | 제15조의4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<br>1.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, 융자,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<br>2.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<br>3.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 지원<br>4.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<br>5.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<br>6.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|
| <신 설> | 제15조의5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)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 |

| | |
|---|---|
| | 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1. 제15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<br>2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제15조의4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<br>3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<br>4.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|
| <신 설> | 제15조의6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제15조의5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,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. |



**붙임2** **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**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88호

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##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8의2호,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범위)**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범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(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.군.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.

**제3조(협의체)** 영 제15조의2제3항에서 "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,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"란 「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55호)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(이하 "관계장관회의"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4조(지정기준)** ①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산업 특화도 :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(LQ)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

(입지계수 $LQ_i=(\frac{Y_i^r}{Y^r})/(\frac{Y_i^n}{Y^n})$, $Y_i^{r(n)}$: r지역(전국) i산업 종사자수, $Y^{r(n)}$: r지역(전국) 전체 종사자수)

2. 지역내 비중 :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·군·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
3.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: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(DI)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

(다양성지수 $DI_j = \frac{1}{\sum_i (\frac{Q_{ij}}{Q_j})^2}$ , $Q_{ij}$ : j지역내 i업종 종사자수, $Q_j$ : j지역 업종군별 종사자수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.

1.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가.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
   나. 주된 산업 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
2.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가. 지역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.군.구 평균 이상이면서,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
   나. 지역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
   다.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
3. 그 밖에 대내외 경제여건변화, 기술변화, 기업활동 등 특정산업 및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5조(현장실사 등)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지정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및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청과 관련된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

**제6조(판단근거)** ① 주된 산업의 분류는 특별지역의 지정신청일 기준 최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(3자리 숫자 사용)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4조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특별지역의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통계청,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, 「한국전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, 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이 전국을 단위로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하는 최신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연구원이 산출.분석한다.

**제7조(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결정)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 특별지역의 지정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 제15조의2에 따른 시.도지사의 신청서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.조정한 결과에 따라 특별지역의 지정여부, 지정기간, 지원내용을 결정한다.

**제8조(재검토 기한)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